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검 토 보 고

I. 주요내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개발 촉진 및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기본계획 수립, 이행점검 결과 및 보완대책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개발의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원자력진흥위원회에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개발 촉진위원회를 설치함(안 제8조).
- 정부는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도개선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협조 요청 또는 권고를 하거나 제도개선등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의 개발을 위한 국내 사업의 수

행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음(안 제10조).

- 정부는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개발 역량을 보유한 민간기업의 육성 및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의 신속한 실증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지·비용 지원 및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관련 연구시설·장비의 이용 지원 등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11조).
- 정부는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개발을 위하여 민간기업·공공기관과 공동 출자하는 회사의 설립과 소형모듈원자로 관련 연구조합의 설립·운영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12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의 진흥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특구를 지정할 수 있음(안 제13조).
- 정부는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개발,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시행할 수 있음(안 제14조).
- 정부는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에 관한 국제협력 증진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고, 정부는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기술 표준의 국제화 등을 추진·지원할 수 있음(안 제15조).
- 정부는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확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음(안 제16조).

II. 검토의견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¹⁾에서는 행정기관의 장이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인·허가, 분쟁 조정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에 관한 사항이 관련 법률에 명시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개별 법률에서 위탁·대행·지정 등을 통하여 법인·단체 또는 개인으로 하여금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경우에는 법률에 구체적인 대상기관이 명시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규정을 함께 두는 것이 바람직함.²⁾

제정안에서는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개발 촉진위원회(이하 ‘촉진위’)의 경우 원자력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하고, 제17조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의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위탁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지 않음.

촉진위는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개발 기본계획의 수립과 이행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진흥 특구의 지정에 관한 사

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위원회의 설치절차 등) ③ 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인·허가, 분쟁 조정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제8조제3항에 따른 분과위원회 등의 위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에 관한 사항이 관련 법률에 명시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국회사무처 법제실, 「법제기준과 실제」, 2024. 5, p.750

항 등을 심의대상으로 하고,³⁾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의 일부를 수탁받아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이 행하는 업무는 공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제 정 안	수정의견
<신 설>	안 제1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촉진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과 제17조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 ⁴⁾ 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3) 안 제8조제2항

4)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①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가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후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한정위헌, 2011헌바117, 2012. 12. 27.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129조 제1항의 ‘공무원’에 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2007. 7. 27. 법률 제85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9조 제2항의 제주특별자치도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중 위촉위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

제130조(제삼자뇌물제공)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31조(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①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전2조의 죄를 범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제삼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공무원 또는 중재인이었던 자가 그 재직 중에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④전3항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제132조(알선수뢰)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 그 밖에 개정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이며, 자세한 수정사항은 주서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II. 관계 기관 의견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개정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음.
 - 첫째, 현재 소형모듈원자로와 관련된 기술개발, 인력양성 등의 사업을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도 추진 중이거나 추진할 예정이므로, 동 사업의 지원 주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서 정부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
 - 둘째, 발전사업은 기본적으로 사업자가 부지를 확보하여 추진하는데, 정부가 소형모듈원자로 실증부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개정안은 현행 「전원개발촉진법」⁵⁾ 등 에너지 법령체계와 배치될 우려가 있고, 향후 국내 소형모듈원자로 실증을 위한 초도호기 건설 등이 추진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자가 부지를 확보하고 기후부 소관 인·허가 절차를 거쳐 추진해야 하므로, 개정안 제11조제1항에서는 R&D를 위한 연구용원자로의 실증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음.

(전문위원 박 혜 진)

5) 「전원개발촉진법」

제11조(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의 지정고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원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원개발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